



주요국의 퇴직연금 소송 사례와 정책적 함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강성호 연구위원

- 최근 우리나라도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금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을 포함한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소송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소송리스크의 의미 및 발생원인 등을 살펴본 후, 미국 등 선진국의 수탁자책임 위반 등 퇴직연금 관련 소송 사례 및 대책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소송원인을 살펴보면 퇴직연금 가입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운용단계, 급부단계인 수탁자책임과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소송임
 - 운용관련 소송 사례는 투자실적 조작(예: AIJ 소송), 기금의 사외적립 미충족 및 사내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예: 맥스웰 소송), 수탁자의 잘못된 투자(예: 알라바마 퇴직연금기금 소송), 과도한 거래비용 지출, 횡령 등(예: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소송, Wildwood Industries 社 소송) 다양함
 - 급여관련 소송 사례는 무리한 연금급여 확대보장(GM 소송), 연기금의 사외적립 부족(아트리움 소송), 제도 변경 후 연금급여 감소(IBM 소송) 등 다양함
- 선진국들은 퇴직연금 관련 소송문제를 경험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수탁자별 책임 기준 강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함
 -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하도록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함
 - (수탁자책임 기준 강화) 종합적인 수탁자책임 규제형태에서 수탁자별 책임 규제형태로 전환함
 - (수급권보호 강화)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은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함
- 최근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가입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으로 인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수탁자별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인 독자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1. 검토배경



- 퇴직연금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상품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연금운용에 대한 수탁자책임¹⁾을 포함한 수급권보호와 관련된 소송¹⁾이 우려됨
 - 퇴직연금 적립금 규제에 대한 완화조치로 인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가 증가하고 가입자의 투자상품 선택폭이 확대되어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한 수탁자의 역할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투자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가입자와 수탁자간의 이익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함
- 미국 및 일본은 연금자산운용 자유화 등으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체계²⁾ 확립 등 대책마련에 주력함
 - 일본은 일본방직업 후생연금기금소송(기업이 연금기금이사 제소), 동경실업 후생연금기금소송(연기금이 운용기관 제소) 등 자산운용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³⁾
 - 미국의 수탁자책임 소송은 ERISA법에 기초한 소송차원을 넘어서 연기금의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의결권 행사여부 등) 등 파생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 사례가 발생하고,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고는 소송리스크의 의미 및 발생원인 등을 살펴본 후, 미국 등 선진국의 수탁자책임 위반 등 퇴직연금 관련 소송 사례 및 대책을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함

1) 여기서의 소송은 가입자(근로자, 기업)와 수탁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수탁자(금융기관) 간의 소송도 포함됨

2)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의미함

3) OECD 주요국의 퇴직연금 규제감독 체계, p. 31

2. 소송리스크의 의미 및 발생원인



■ 퇴직연금 소송리스크는 수탁자가 법규 위반으로 근로자 등으로부터 법률적 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임

- 소송리스크(Legal Risk)는 사업자(금융기관) 등 수탁자의 법 위반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탁자리스크에 해당됨
 - 퇴직연금리스크는 위탁자리스크, 수탁자리스크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소송리스크, 운용상품설정리스크, 사업자선정리스크가 수탁자리스크에 해당됨
- 기금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미국 등은 금융기관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연기금, 운용사, 컨설팅사, 정부 등도 수탁자의 범주로 간주함

〈표 1〉 퇴직연금 소송리스크(Legal Risk) 의미 및 특징

구분	내용
정의 (리스크)	- 수탁자의 법규 위반으로 근로자로부터 법률적 소송에 직면하게 되는 리스크 · 수탁자리스크 중 법규준수 리스크(Legal Risk)에 해당
대상 (수탁자)	- 사용자(기업), 사업자(금융기관), 연기금(기금위원회), 정부 등 · 포괄적 수탁자 모두 해당
제반 영향	- 소송리스크와 관련된 연금급부의 지급불능 시 근로자의 수급권 저해 우려 등 · DB형에 비해 DC형에서 소송리스크 발생 빈도가 높은 수준
법규 위반	-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 및 개인정보의무 등 수탁자책임 규제

자료: 미국·일본·영국의 퇴직연금 관련법 등에 기초하여 작성함

■ 충실의무, 주의의무, 분산투자 및 개인정보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퇴직급부의 지급불능 등으로 근로자 수급권이 저해됨

- 수탁자책임 위반 사례는 일반적으로 DB형 퇴직연금보다 근로자가 모든 운용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에서 높음
 - 기업이나 연기금에서 자산운용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 투자정보 부족, 수탁자와의 이익상충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하기 때문임
- 또한 퇴직연금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금형 지배구조가 계약형 지배구조보다 수탁자책임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미국 등 선진국의 소송원인을 퇴직연금 가입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 등 운영프로세스별로 보면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퇴직연금 운영프로세스별 소송원인

구분	소송원인
가입단계	- 부적정한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사용자의 충실의무 위반) - 법령에 의한 교육 미 실시 및 내용 부실(불충분한 교육) 등
운용단계	- 운용관리 업무 수행상의 선관주의 위반(법정 운용방법 및 기준 위반) - 퇴직연금 사업자의 법정 금지행위 위반(특별이익 제공 등) - 취급실적 제출상의 오류 또는 통지 및 보고의무 누락 등
급부단계	- 운용관리기관의 부적정한 기초율 적용 - 퇴직급부 적정성 확인 등 선관주의 의무 위반 - 퇴직연금 적립금 사기 및 부정행위 등

자료: U.S. Department of Labor(2018); 일본 후생노동성(2018)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 (가입단계) 사용자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부적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소송의 주요 발생원인임

- 법령에 규정한 투자교육(가입자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해 막대한 자산운용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됨

■ (운용단계) 사업자가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으로 약속하거나 별도의 특별이익 제공 등에 의해 소송이 발생함

- 법정 운용방법이나 기준에 위반하여 운용상품을 제시하는 등 운용관리업무 수행상의 선관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등임
- 또한 가입자에 대한 고지의무·통지의무·서류제출의무 등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활용하는 경우임

■ (급부단계) 운용관리기관이 부적정한 기초율을 적용하고 퇴직연금의 적정성 검증이 허위 조작되거나 수탁자에 의한 적립금 사기 및 부정행위 등에 의해 소송이 발생함

3. 선진국의 퇴직연금 소송리스크 사례 및 정책변화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 소송리스크는 가입단계, 운용단계, 지급단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운용단계의 수탁자책임 위반과 급여 측면의 소송이므로 운용, 급여단계의 소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특히, 국민연금기금 등 스튜어드십의 적극적 행사 등으로 인해 연금금이 소송의 주체 혹은 대상으로 부각 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가. 운용관련 소송 사례

- (AIJ 소송) 일본에서는 수탁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실운용, 적립금 횡령 등으로 수탁자에 대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AIJ투자자문화사의 후생연금기금 사기사건인 AIJ 사건임⁴⁾
 - 일본은 후생연금기금, 기금형 확정급부 기업연금의 두 가지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과 다양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가 공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AIJ 사건은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생연금기금에 투자권유를 통해 기금을 모으고, 허위 운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한 투자실적 조작으로 손실을 입힌 사건임
 - 2011년 당시 피해 규모는 투자원금 1,458억 엔 중 잔액 81억 엔으로 약 95%의 손실이 발생함
 - 피해자 규모는 약 88만 명으로 이 중 34만 명은 연금 수급자였으며, 업종을 고려할 때 대부분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 종사자로 알려짐
 - 주요 표적은 후생연금기금 중 종합형으로, 이들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기금 재정상황이 어렵고 자산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 특히, 후생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중소기업은 후생연금을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자산투자로 이어진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됨
- (맥스웰 소송)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기금을 사외적립 운용을 충실히 하지 않고 사내 사업 자금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금이 파산한 맥스웰(Maxwell) 사건이 대표적임⁵⁾
 - 퇴직연금 기금에서 4억 파운드를 빼내 그룹운용에 전용한 사기 사건으로 약 3만 명의 가입자들이 4~4.5억 파운드의 손실을 입음⁶⁾

4) 류건식(2016),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고령화리뷰』, 보험연구원, p. 3

5) 손성동(2018),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기금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6) 이봉주·류건식·손성동(2018),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윤리경영에 대한 고찰』,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분리, 독립되어야 할 사업주, 수탁자, 투자 관리자의 역할을 한 사람(맥스웰)이 통합 관리함에 따라 연금 기금의 독립성이 무력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금 및 회사의 파산이 초래된 사건임
- (알라바마 퇴직연금기금 소송) 미국 '알라바마 퇴직연금' 기금은 수탁금융기관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WorldCom 社の 주식과 채권을 인수함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의 가격 폭락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1억 1천만 달러를 배상받음
 - '알라바마 퇴직연금'은 수탁금융기관으로 Citigroup, JP Morgan Chase 및 BOA를 두고 있으며, 동 수탁금융기관은 110억 달러의 회계부정을 한 WorldCom 社の 주식 및 채권을 인수함
 - 이로 인해 '알라바마 퇴직연금'은 기금에 대한 손해로 수탁금융기관에 대해 2억 7천 5백만 달러의 배상 소송을 제기함⁷⁾
-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소송) 회사가 DB형 퇴직연금 자산을 보험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기금에 손해를 초래한 소송임⁸⁾
 - 회사는 Prudential Insurance Company에 보유하고 있는 연금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퇴직자의 연금액을 빠뜨리는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소송임
 - 동 소송건과 관련하여, 회사는 약 75억 달러의 스핀오프⁹⁾ 거래(Spin-off Transaction)를 함에 있어서 그 비용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금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판결됨
- (기타 절도, 횡령 등) Wildwood Industries 社 회계담당자의 절도사건, Pacesetter Corp. of America 社 고용주의 퇴직급여 횡령사건 등 퇴직연금 수탁인의 범죄행위가 발생함¹⁰⁾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퇴직연금 관계자¹¹⁾의 적립금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 방지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ERISA법 412조)에 신원보증보험(Fidelity Bond)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7) 한국은행(2004), 「미국 3대 은행들, '알라바마 퇴직연금'에 1억 1천만 달러 배상」, 『해외 거래기관 동향』

8) <https://insurancenet.com/article/supreme-court-hands-verizon-retirees-victory-pension-spinoff-case#.XKXJAm7mmQ>

9)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주식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기존 지분율에 비례해 주식을 배분하는 것으로 모회사의 기존 주주가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임. 미국에서 기업이 자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함

10)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ee Benefits Security Administration(2010), "Contributory Plans Criminal Project", 퇴직연금 관계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소송 사례는 Gallagher(2008), "ERISA Bonding Requirements and the Fidelity Insurer", *Fidelity Law Association Journal* 등을 참조함

11) 수탁자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기금 및 제도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계인을 의미함

〈표 3〉 퇴직연금 운용관련 소송 사례

사례	주요내용
AIJ 소송	- 허위 운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투자실적 조작 - 후생연금을 대행하는 중소기업의 고수익 창출 압박 등에 따른 부작용
맥스웰(Maxwell) 소송	- 기금의 사외적립 미충족 및 사내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
알라바마 퇴직연금기금 소송	- 수탁자의 잘못된 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소송	- 과도한 거래비용 지출
Wildwood Industries 社 소송 등	- Wildwood Industries 社 회계담당자의 절도사건 - Pacesetter Corp. of America 社 고용주의 퇴직급여 횡령사건 등

자료: <http://www.pensionrights.org/tags/lawsuit>; <https://www.bsfirm.com/ERISA-Pensions-401-k-s.shtml> 등 인터넷을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정리함

나. 급여관련 소송 사례

■ (GM 소송) 미국 GM 사례는 급여단계의 문제와 관련되며, 산업발전기에 파업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하게 연금급여를 올려준 결과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발생한 소송 건임

- 1950년 GM은 전미자동차노동조합(United Automobile Workers: UAW)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 연금기금을 통해 매달 125달러¹²⁾의 연금을 지급하는 디트로이트 협약을 체결함
- 당시 GM의 상황은 매우 순탄하여 이후 노사협상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인상은 지속되었으며, 1961년에는 퇴직연금이 12%나 인상되었으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자동차산업의 수익 악화가 진행되기 시작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협상에서 24%, 1979년에는 30%를 인상하는 등 40년 동안 연금액은 15배나 증가함
-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립액 부족이 증가하였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운용수익률 및 사망률 가정을 조작하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게 됨

■ (정부 퇴직연금 지급보장 소송) 영국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 근로자들의 가입 유도를 위해 정부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처럼 선전을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2007년에 퇴직연금 소송에 직면함¹³⁾

- 2006년에 영국의 국회 옴부즈맨이 2년간의 조사를 마친 후 근로자에게 보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유럽 법원도 영국의 연금지급 보장책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림
 - 영국 정부는 과도한 보상을 선례로 남길 수 없다며 조언을 무시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게 됨

12) 2018년 기준으로 1,100달러 수준이며 사회보장연금과 합산한 금액임

13) 한국노동연구원(2007. 2. 16), “국정부 기업연금 관련 소송당해”, 해외노동동향: Theguardian(2007. 2. 8), “Workers sue government over collapse of pension schemes”

- 정부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약 8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최대 37억 파운드¹⁴⁾(한화 약 5.5조 원)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 (아트리움 소송) 아트리움(Atrium Health)¹⁵⁾의 연금제도는 DB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의 급여를 충당하기 하도록 하는 ERISA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한 연금액을 마련하지 못해서 소송에 직면함¹⁶⁾
 - 이에 따르면 아트리움의 연금급여 적자액은 2017년 말 기준 3억 7,90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 회사에서 연금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
 - ERISA법에 의하면 연금보증공사(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PBGC)에 가입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음
- (IBM 소송) IBM은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과정(DB형에서 CB형으로 변경)에서 연금급여가 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연령차별로 인해 소송에 직면 함
 - 논쟁의 배경은 1995에 DB형에서 CB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DB형(월급과 연수를 기준으로 급여결정)에 비해 CB형(고정 이자율로 적립된 적립금에 의해 급여결정)이 고령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음
 - 고령근로자의 퇴직 소득은 20~50% 감소하는 것에 반해 회사는 장기적으로 연금 부채를 줄일 수 있고 현직 직원들은 수익이 증가할 수 있어 CB형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¹⁷⁾
 - IBM은 1995년에 퇴직연금 제도 변경에 따라 급여 차별에 따른 소송으로 현직 및 전직 직원에게 3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새로운 연금제도로의 변경이 고령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판결될 경우 추가로 14억 달러로 지급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¹⁸⁾
- (MetLife 소송) MetLife는 회사의 DB형 연금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연금급여 옵션의 보험수리적 등가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2018년 12월)¹⁹⁾
 -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회사와 그 직원은 연금 수탁자인 MetLife가 그들의 퇴직연금제도(Metropolitan Life Retirement Plan)에서 약속된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소송임
 - 2002년 1월부터 기존 DB형에서 CB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자는 2003년부터 CB형에 자동 가입되고, 기존 직원은 DB형에 남거나 CB형으로 전환하는 선택을 하게 됨
 - 이 과정에서 급여산식에 사용되는 이자율(6%)과 사망률(1971 GAM 사망률) 표를 결합한 결과, 기존

14) 영국 파운드 환율(2019. 4. 4 기준)은 1파운드당 1,499원임

15) 40개 이상의 병원을 관리하고 3개 주에서 65,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건강보험회사임

16) <https://www.charlotteobserver.com/latest-news/article221584890.html>

17) <https://solidarity-us.org/atc/113/p351/>

18) <https://www.nytimes.com/2004/09/30/technology/ibm-employees-get-320million-in-pension-suit.html>

19) <https://www.plansponsor.com/lawsuit-argues-metlife-pension-calculations-use-outdated-mortality-table/>

- 의 기본 연금보다 낮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산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됨
- 이에 따라, ERISA에 부합하는 계획을 개혁하는 법원 명령, ERISA에 따라 요구되는 개혁 계획에 따른 미래 급여 지불, 부적절한 금액의 지급 및 법원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기타 구제를 요청한 상태임

〈표 4〉 퇴직연금 급여관련 소송 사례

사례	주요내용
GM 소송(디트로이트 협약)	- 무리한 연금급여 확대보장으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
정부 퇴직연금 지급보장 소송	- 근로자들의 가입 유도를 위해 정부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것처럼 선전을 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2007년에 퇴직연금 소송에 직면
아트리움(Atrium Health) 소송	- 직원의 급여를 충당하기 하도록 하는 ERISA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분한 연금액을 마련하지 못함(연기금의 사외적립 부족) - 연금보증공사(PBGC)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미가입
IBM 소송	-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과정(DB형에서 CB형으로 변경)에서 연금급여가 고령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연령차별로 인해 소송에 직면
MetLife 소송	- DB형 연금제도에서 운용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연금급여 옵션의 보험수리적 등가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인해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자료: <http://www.pensionrights.org/tags/lawsuit>; <https://www.bsxfirm.com/ERISA-Pensions-401-k-s.shtml> 등 인터넷을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정리함

다. 정책변화 및 대응

- 여러 가지 소송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퇴직연금 규제 완화과정 등에서 가입자와 수탁자 간 이익상충 문제로 수탁자 책임 위반 소송을 경험한 미국 등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수탁자별 책임 기준 강화 등과 같은 대응방향을 제시함
- (컴플라이언스 체계) 관련 소송 사례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금융기관 등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개선함
 - 미국 등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탁자들이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법규준수를 잘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함
 - 수탁자책임과 관련된 법규준수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윤리경영 인식 제고를 위해 윤리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대한 내부교육을 추진함
- (수탁자책임 기준)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수탁자책임 규제형태에서 수탁자별 책임 규제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함
 - 미국 등은 수탁자의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컨설팅사 등으로 확대하여 주의의무, 충실의무, 분산 투자의무, 개인정보준수의무 등 4대 수탁자책임을 수탁자별로 엄격히 규정함
 -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연금자산을 부적절하게 활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특히 기금형 지배구조에서는 연기금 운용과 관련 이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연기금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함

■ (수급권보호) 퇴직연금 관계자의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은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함

- 미국은 수탁자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관계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소송리스크에 사전 대비함
 - 또한 수탁자책임의무 위반 및 제도관리상 과실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수탁자책임배상보험의 개발을 정부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음

〈표 5〉 소송에 대한 대응사례

대응방향	내용	관련 소송 사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 금융기관 등 수탁자의 법규준수를 자체적으로 감시 등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 일본 AIJ 소송, GM 소송, 맥스웰(Maxwell) 소송
수탁자책임 강화	- 연금법 제정과 감독기구 설치 등 수탁자책임 강화 - 수급권보호 조치 강화(연금보상제도(PCB: Pension Compensation Board) 강화, 최소적립요건(MFR: Minimum Funding Requirement)을 설정)	- 맥스웰(Maxwell) 소송, 알라바마 퇴직연금 기금 소송,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소송
수급권보호 강화	- 퇴직연금 관계자의 적립금 사기, 횡령 등 부정행위로 인한 기금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 맥스웰(Maxwell) 소송, Wildwood Industries 社 회계담당자의 절도사건, Pacesetter Corp. of America 社 고용주의 퇴직급여 횡령 사건 등

4. 결론 및 시사점



- 퇴직연금 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가입자 선택폭 확대를 위해 기금형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수탁자책임 위반 소송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수탁자 범위를 사용자, 연기금, 사업자,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해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 수탁자책임을 수탁자별로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퇴직연금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책임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자별 책임 규정의 차별화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미국 등 선진국처럼 수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각자의 역할에 부합한 수탁자책임 기준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인 독자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수탁자책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법규이해 교육과 소송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독자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요구됨
- 현재 금융기관 등 수탁자들이 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 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이익상충 문제 발생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수탁자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용보증보험제도의 도입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kiri**